

● 제322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(의안번호:1635)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
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4. 2. 28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서울특별시장 제출 】

의안번호 1635

I. 개정안 개요

1. 제출자 및 제안경과

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 안 일 : 2024. 02. 05.

다. 회 부 일 : 2024. 02. 07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서울 직장 성희롱·성폭력 예방센터 운영이 종료('23. 8. 31.)됨
에 따라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서울 직장 성희롱·성폭력 예방센터 설치, 기능, 운영비 지원
및 정산, 지도·점검 등 규정 삭제(안 제21조~제24조)
- 문구 등 수정(안 제10조,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 /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없음
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3. 11. 9.~11. 29.) 결과: 의견없음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서울 직장 성희롱·성폭력 예방센터 운영이 2023년 8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상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·운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.

<서울직장성희롱·성폭력예방센터 개요>

- 설립근거 : 「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1조
- 위치·규모 :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3층, 267㎡
- 수탁기관 : (사)젠더교육플랫폼 효재
- 인 력 : 3개팀 10명(센터장1, 팀장3, 팀원 6) ※현원 7명
- 위탁기간 : '20. 6. 8.~'23. 8. 31(3년3월)
- 주요기능 : 직장(소규모 사업장) 내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예방 및 지원
- '23년 예산 : 810백만원(민간위탁금)

2 주요사항 검토

□ 서울 직장 성희롱·성폭력 예방센터 위탁종료에 따른 근거규정 삭제 (안 제21조~ 24조 삭제)

- 서울 직장 성희롱·성폭력 예방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함)는 2018년 미투운동으로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표한 성희롱·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¹⁾에 따라 「서울#withU 프로젝트」 일환

으로 그 설립이 추진되었음.

- 그 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2020년 6월 8일 성희롱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통합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센터가 설치되었음.
- 센터의 주요기능은 아래와 같음.

서울 직장 성희롱·성폭력 예방센터 사업범위
「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2조(센터 기능)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성희롱·성폭력 사각지대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2.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3.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.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공유 5. 성희롱·성폭력에 관해 시민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·캠페인 6. 그 밖에 성희롱·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2020년 6월 8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3년 3개월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, 직장내 성희롱·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응 체계가 부족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‘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서울’ 캠페인을 통해 성평등한 조직 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
1) 여성정책담당관-5272(2018.3.21.), 성희롱·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, 서울특별시청 방침 제49호,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, pp. 24-25.

<서울 직장 성희롱·성폭력 예방센터 운영성과>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찾아가는 교육	20개소	71개소	81개소	47개소
조직관리 컨설팅	20개소	26개소	26개소	2개소
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지원	16건	26건	25건	
대시민 온·오프라인 캠페인	18회	15회	10회	2회

- 다만 2022년 기준 서울 소재 기업 중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의 97%로 약 100만개에 달하나²⁾ ‘22년도 교육이수기관은 81개소에 그치고 그 중 민간기업 비중은 56%로 45개소 그치는 등 센터의 운영성과가 부진하였음.
- ‘성희롱·성폭력 예방’이라는 단일 목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함으로써 교육을 이수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교육대상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.

<30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직장내 성희롱·성폭력 교육 실적>

구분	‘20년 8월~12월	‘21년	‘22년
교육 이수기관	20개소	71개소	81개소
민간기업 비중	6개소(30%)	49개소(69%)	45개소(56%)

-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의 통합적 관점 접근 및 서울시 차원의 기업참여 제고방안이 필요하

2) 통계청, 서울특별시·산업·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, 종사자수(‘20)

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8월 31일자로 동 사업의 민간위탁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.

- 위탁운영 종료에 따라 센터 사무 중 예방교육·컨설팅·안심일터 조성 사업은 기존 조직문화 개선 및 일·생활 균형 등과 연계하여 통합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·생활균형지원센터로 이관하고, 피해자 지원은 기존 성폭력상담소 17개소에서 수행할 예정임.
- 개정안은 서울 직장 성희롱·성폭력 예방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를 종료하고 센터 설치 근거를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21조(서울 직장 성희롱·성폭력 예방센터 설치) 시장은 성희롱·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성희롱·성폭력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 보호를 위한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서울 직장 성희롱·성폭력 예방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	<삭 제>
제22조(센터 기능)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<삭 제>

1. 성희롱·성폭력 사각지대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
2.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
3.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공유
5. 성희롱·성폭력에 관해 시민 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·캠페인
6. 그 밖에 성희롱·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3조(운영비 지원 및 정산) ①
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센터장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하여 정산·보고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제24조(지도·점검 등)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

<삭 제>

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에 따라 위탁기관에 대하여 지도·점검 등을 할 수 있다.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서울 직장 성희롱·성폭력 예방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면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센터의 설치 목적인 ‘성희롱·성폭력 예방’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위탁사무를 종료하였는 바, 그 후속조치로 센터의 설치·운영 근거를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